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15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형근, 오현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0. 7.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8,000,000원을, 피고 C은 19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일원의 F공사에서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하였고 (주)D의 현장대리인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D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원고가 (주)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그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며 위 공사가 타절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D이 수익금의 5%를 갖고 나머지를 원고가 보수 또는 경비 명목으로 갖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D이 위 공사 도급인인 H 주식회사(이하 ‘H(주)’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타절 정산금 명목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 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보수채권이있다(피보전채권). 그런데 (주)D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2020. 7. 2. 피고들에게 H(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에 따라 2021. 4.경 H(주)로부터, 피고 B은 208,000,000원을, 피고 C은 19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주)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주)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후 위 채권 변제를 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 즉, (주)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주)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주)D은 모종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이는 무효이므로, (주)D의 채권자인 원고는 (주)D을 대위하여 위 채권양도무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반환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은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주)D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로 부적법하다.1)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원고가 2022. 8. 12. 피고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주)D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5437)에서, 위 법원은 2024. 1. 17. “H(주)는 2019. 9. 20.경 (주)D과 사이에, H(주)가 (주)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9. 10. 1.부터 2020. 8. 31.까지, 공사대금 12,676,2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주)와 (주)D은 2020. 3. 11.경 합의금액을 1,23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타절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H(주)와 (주)D은 2020. 3. 12.경 ‘H(주)가 (주)D에게 공신타절정산 합의금으로 1,535,6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000,000원은 2020. 3. 23.에,

535,600,000원은 2020. 5. 20.에 변제한다’는 등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H(주)가 (주)D에게 위 공사타절정산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H(주)와 (주)D은 2021. 4. 14.경 H(주)가 (주)D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H(주)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측에 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초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주)D의 익명조합 내에서의 역할(익명조합원의 출자 사실 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주)D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익명조합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주장의 이익분배 약정(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익금의 95%를 분배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된 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분배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수익금 중 95%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부산고등법원 2024나51373)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주)D에 대한 채권(현장대리인으로서의 보수채권 포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주)D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주)D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과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주)D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별지

1) 피고들의 2023. 4. 18.자 준비서면의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기각을 구한다는 주장을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